

●소방청고시 제2022-23호
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2년 09월 15일

소방청장
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 일부개정 발령

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5호 가목에”를 “제5호가목1)부터 5)까지에”로 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”를 “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예상제연구역 전체”를 “예상제연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할 것”을 “할 것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㎡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㎡당 1㎧/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,000㎧/hr 이상으로 할 것.

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”를 “공기유입구”로, “이상”을 “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”를 “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하향 60°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”를 “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m/s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배출량 이상이 되도록”을 “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내열성(석면재료를 제외한다)의 단열재료”를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(석면재료를 제외한다)인 단열재료 풍도 외부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자동화재감지기”를 “화재감지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